

일련번호	17	감 사 자	5급 ○○○, 6급 ○○○		공 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창경궁관리소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창경궁관리소

주 의 요 구

제 목 국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창경궁관리소

내 용

창경궁관리소는 '서울 ○○구 ◇◇동 2-1' 등 16건의 국유재산에 대해 유상으로 사용 허가하였고, 그 중 '서울 ○○구 ◇◇동 2-1'에 대해서는 2007.8.~2015.12.까지 ★★체험학교 운영의 용도로 ○○○○○○(대표 ♀♀♀)에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하였다.

「국유재산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는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는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창경궁관리소는 2004년부터 '서울 ○○구 ◇◇동 2-1' 내 건물에 대하여 '관람객 휴게소'의 용도로 민간에 국유재산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하다가, 2005.12. 허가를 받은 민간업자가 수익성 저하 등의 사유로 운영을 포기하자, 2007.7.까지 해당 공간을 비워두었다.

이후 2007.8. 해당 공간 활용 및 ★★체험활동 운영 등을 목적으로 ○○○○○○(대표♀♀♀)에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며, 수의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를 수의로 허가할 수 있다 판단하여, 경쟁에 부치지 않고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였고, 이후 2015.12월까지 1~2년 주기로 사용허가를 갱신하였으나 적절한 검토 없이 기존의 결정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하였다.

더욱 ★★체험학교의 용도로 사용허가를 받은 상기 단체는 해당 국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본래의 용도인 ★★체험학교 운영 외에 자체적으로 인정하는 '☆☆☆☆교육전문가' 및 '■■■■체험학습지도사'에 대한 교육('14년 21회, 회당 12일 이상)·검정('14년 21회) 장소 및 ◆◆◆◆교육센터 등을 운영하는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등 당초 허가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창경궁관리소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 ○○구 ◇◇동 2-1' 등 16건의 국유재산에 대해 2015.1.1.부터 사용하도록 허가하였으면 사용료(9,715천원)를 사용·수익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4.12.31.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했으나, 납부기한을 사용 발생 이후인 2015.1.9.로 지정한 후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서울 ○○구 ◎◎3가 1-296' 등 5건(1,491천원)의 사용료는 정상적으로 사용일 이전에 납부되었으나 '서울 ○○구 ◇◇동 2-1' 등 11건(8,224천원)은 사용일 이후에 납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창경궁관리소장은 향후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시 「국유재산법」에 따라 일반경쟁을 통해 사용허가 하고, 사용료는 사용일 이전에 납부 받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서울 ○○구 ◇◇동 2-1'내 건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 계획을 마련하시어 시행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8	감 사 자	5급 〇〇〇, 6급 〇〇〇		공 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창경궁관리소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창경궁관리소

권 고

제 목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창경궁관리소

내 용

2004년 8월 경기도 성남에서 처음 발견된 참나무시들음병은 광릉긴나무줄을 매개충으로 참나무류를 고사시키는 병으로,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발생(전국의 85%)하고 있으며, 산림과학원이 배포한 「참나무시들음병 진단요령 및 방제방법」에 따르면 11월~이듬해 3월까지 피해목을 제거하고, 수간에 끈끈이롤트랩을 설치할 경우 전년도 피해목은 4월에, 신규 피해목은 5월~6월에 설치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창경궁관리소 내 참나무시들음병 감염목의 발생수는 2009년 6주, 2011년 43주, 2012년 41주, 2013년 65주, 2014년 103주로 감염목이 증가하고 있고, 상기 병의 피해목 및 자연고사목에 대한 벌채로 인해 창경궁 내 참나무류는 2012년 총 354주에서 2015년 4월 현재 290주로 3년간 64주가 감소하였으며, 그중 101주(전체의 34%)가 상기 병에 감염된 상황이다.

창경궁관리소는 2009년 창경궁 내 참나무시들음병 발병이 최초로 확인된 후 2011년부터 이에 대한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2012년에는 별도의 방제를 실시하지 않았고, 2014년 지정기탁금을 이용하여 끈끈이롤트랩 등을 설치하며 계약기간 소요 등을 사유로 전년도 피해목이 존재함에도 「참나무시들음병 진단요령 및 방제방법」이 제시한 설치시기보다 2개월 정도 지연된 6.19.~7.3.에 설치하는 등 상기 병에 대한 방제가 적절하지 못하였다.

또한, 인접한 창덕궁 및 종묘의 경우에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창덕궁 및 종묘의 조경환경 및 역사성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수목에 대한 벌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나, 2012년~2014년까지 상기 병의 방제를 위해 총 248주(2012년 183주, 2013년 19주, 2014년 46주)의 감염주를 벌채하고 있어, 방제 횟수의 증가 등 감염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방제가 요구된다.

조치할 사항

창경궁관리소장은 향후 궁궐 내 수목의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한 방제횟수를 늘리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제로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라며, 인근 창덕궁관리소 및 종묘관리소 등과 동일한 시기에 공동 방제를 실시하는 등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9	감 사 자	5급 ○○○, 6급 ○○○		공 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감액	재정상 조치금액	1,359,119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창경궁관리소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창경궁관리소

시 정 요 구

제 목 창경궁 양화당 해체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창경궁관리소

내 용

창경궁관리소는 '창경궁 양화당 해체보수공사'에 대해 ○○○○건설주식회사와 계약 체결(2015.4.16./435,118천 원)하여 2015.4.27. ~ 8.24.까지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15.6.5.일 현재 지붕산자까지 해체를 완료하였다.

창경궁관리소에 대한 자체감사기간중 동 공사 현황을 확인한 바 ○○○○건설주식회사는 현장여건(실측보고서 사진 촬영 등)의 이유로 목재치목장 등 4개 공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였다.

변경시공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현황

(단위:원)

구 분	규격	당 초			변 경			증감	변경 사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계				22,835,903			21,476,784	-1,359,119	
목재치목장	FRP천라이트	63㎡	28,300	1,782,900	0㎡	28,300	0	-1,782,900	
목재치목장	PVC 천막지				40㎡	20,938	837,520	837,520	지붕재질 변경
가설방음벽설치	H4.0×L2.0	61m	65,875	4,018,375	0m	65,875	0	-4,018,375	
가설방음벽설치 (실사 안내지부착)	H6.0×L2.0	61m	108,499	6,618,439	0m	108,499	0	-6,618,439	
가설방음벽설치(역차)	H3.0, 4개월				64m	78,826	5,044,864	5,044,864	실사규격 변경
가설방음벽설치(잔차)	H3.0, 4개월				36m	194,550	7,003,800	7,003,800	실사규격 변경

수리용 덧집	FRP썬라이트	463.23m ²	22,486	10,416,189	0m ²	22,486	0	-10,416,189	
수리용 덧집	PVC 천막지				463.23m ²	18,545	8,590,600	8,590,600	지붕재질 변경

공사시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물량의 증감으로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체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하나, 추가 해체에 따른 물량의 증감이 발생할 사유로 인하여 자체종합감사일(2015.6.5.)까지 설계변경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사비 산정결과 1,359,119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창경궁관리소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하여 1,359,119원을 조정하시고, 향후에는 계약 및 감독업무 처리 시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	감 사 자	5급 ○○○, 6급 ○○○		공 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창경궁관리소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창경궁관리소

주 의 요 구

제 목 창경궁 식물원 식물관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창경궁관리소

내 용

「문화재청 조경관리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47호) 제8조(수목증감 보고)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장은 수목의 증감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목대장을 정리하고 증감사항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전년도 수목의 본수와 재적, 증가 및 감소사유별 세부내역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14년 창경궁관리소 온실식물 증감 보고 현황(2015.1.6.)은 다음과 같다.

(단위:점)

구 분	2013년도 말 현재 (A)	년도 증감 내역			2014년말 (A+D=E)	
		증내역(B)	감내역(C)	계(B-C=D)		
소 계	345	68	17	51	396	
온실 식물	자 생 란	90		16(자연고사)	(16)	74
	자생식물	150		1 (자연고사)	(1)	149
	분 재 류	105	68		68	173

※ 감소내역(17점) : 대엽풍란(3), 소엽풍란(2), 제주한란(11), 붓순나무(1) / 제주한란은 20여년 전 △△대 교수가 기증

창경궁관리소에서는 온실식물 자생란(16점)에 대해 2013년 이전에 이미 없었음에도 증감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2014년에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전수 조사한 결과 부족 수량이 발생하자 모두 자연고사 한 것으로 정리 보고 하였다.

또한 조선왕릉관리소(2014.9.16.)로부터 대온실 전시를 위해 분양승인 받은 천연기념물 후계목 창덕궁 향나무 등 20점은 온실식물로 미 등재되어 관리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창경궁관리소장은 앞으로 식물고사 시에는 사진촬영 등을 통하여 기록·유지하시고, 미등재된 천연기념물 후계목 창덕궁 향나무 등 20점은 온실식물로 등재하여 식물원 식물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1	감 사 자	5급 〇〇〇, 6급 〇〇〇	공 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창경궁관리소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창경궁관리소

시 정 요 구

제 목 공사 정기하자검사 및 하자보수담보 책임기간 적용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창경궁관리소

내 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 제①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제①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별법이 정하는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창경궁관리소는 불임(하자보수대상 현황) 내역과 같이 창경궁 화장실(1호) 리모델링 공사 등 32건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정기하자검사 실시하지 않았고, '창경궁 팔각 칠층석탑 보존처리' 등 7건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미적용하거나 오기적용 하였다.

조치할 사항

창경궁관리소장은 「국가계약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고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보수관리부를 기록·유지하시기 바라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미 적용 및 오기 적용한 '창경궁 팔각칠층석탑 보존처리' 등 7건에 대해서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